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10호
2022. 9. 5.(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50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입법예고]

제2022-253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504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생, 정부, 정책, 미디어 콘텐츠, 홍보 마케팅, 비전 수립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8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디자인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의2 제6항을 제5항으로, 제8항을 제6항으로, 제9항을 제7항으로, 제10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9항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 인사운영 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자인정책관의 개방형 직위(3호) 신규 지정(제18조의2)
- 나.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4급상당) 신설(제3조제2항)
 - －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37호****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규칙 제1조)

나. 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규칙 제3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다. 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규칙 제4조)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음

라. 위원의 임기(규칙 제5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함

마. 복지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규칙 제7조)

－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 시 개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온라인

(1) FAX : 02)2133-1430

- (2) E-mail : iamkmj@seoul.go.kr
 -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다. 문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02-2133-4129)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